

대법원 2008. 12.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

따 릇 판 례

대법원 2015. 7. 9 선고 2013두3658, 3665 판결 , 대법원 2012. 6.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
, 대법원 2012. 2. 23 선고 2010두17557 판결 , 대법원 2011. 5. 13 선고
2009다94384,94391,94407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

원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

담당변호사 박□경

피고, 피상고인 대한민국

판결선고2008. 12. 24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,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(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46654, 4661 판결,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),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하며,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(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). 따라서,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,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차한성